2021년도 제4회 경기도

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여 성 가 족 국
(일 반 회 계)

2021. 11.

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
수석전문위원 김 종 근

목 차

1.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(道총괄) ·····1

2. 여가교위 소관 제4회 추경안 규모(일반+특별) ·····1

3.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예산안(일반회계) 검토의견

가. 세입예산안 ····· 3

나. 세출예산안 ····· 4

■ 道 자체사업 ····· 5

■ 국고보조사업 ····· 6

※ 특별회계, 이월사업비 해당없음

1.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(道총괄)

《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》 (단위 : 억원)

구 분	제4회 추경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계	401,558	100%	376,531	100%	25,027	6.6%
일 반 회 계	360,225	90%	336,883	89%	23,342	6.9%
특 별 회 계 (공기업+기타)	41,333	10%	39,648	11%	1,685	4.2%

■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**40조 1,558억원**으로

- 기정예산액(37조 6,531억원) 대비 **2조 5,027억원 증액(6.6%)** 편성됨

○ **일반회계**는 **36조 225억원**으로

- 기정예산액(33조 6,883억원) 대비 **2조 3,342억원 증액(6.9%)** 편성됨

○ 특별회계 : **4조 1,333억원**으로

- 기정예산액(3조 9,648억원) 대비 **1,685억원 증액(4.2%)** 편성됨

2.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■ **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**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안 기준 **8조 43억원**으로, 경기도 예산안 40조 1,558억원의 **19.9%**를 **차지**하고 있음

○ **세입예산안**은 **3조 8,993억 4,500만원**으로

- 기정예산액(3조 7,442억 5,500만원) 대비 ***1,550억 9,000만원 증액(4.1%)*** 편성됨

○ **세출예산안**은 **8조 42억 5,700만원**으로

- 기정예산액(7조 4,920억 7,900만원) 대비 ***5,121억 7,800원 증액(6.8%)*** 편성됨

《여가교위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 - 세입》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제4회 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	점유율(B/A)	
			금액	비율	4추	기정
道 전 체 (A)	40,155,838	37,653,127	2,502,711	6.6%		
여 가 교 위 (B)	3,899,345	3,744,255	155,090	**4.1%**	9.7%	9.9%
일 반 회 계	3,502,333	3,488,667	13,666	0.4%		
평 생 교 육 국	107,406	106,714	692	0.6%		
평 생 교 육 과	6,076	5,392	684	12.7		
교 육 협 력 과	4,896	4,896	0	-		
청 소 년 과	32,314	32,306	8	0.1%		
도 서 관 정 책 과	64,120	64,120	0	-		
여 성 가 족 국	3,394,927	3,381,953	12,974	0.4%		
여 성 정 책 과	13,106	12,945	161	1.2%		
가 족 다 문 화 과	88,736	88,780	△44	△0.1%		
보 육 정 책 과	2,420,879	2,412,401	8,478	0.4%		
아 동 돌 봄 과	857,029	853,142	3,887	0.5%		
일 가 정 지 원 과	14,929	14,437	492	3.4%		
여 성 비 전 센 터	248	248	0.1	0.1%		
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	397,012	255,588	141,424	55.3%		

《여가교위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 - 세출》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제4회 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	점유율(B/A)	
			금액	비율	4추	기정
道 전 체 (A)	40,155,838	37,653,127	2,502,711	6.6%		
여 가 교 위 (B)	8,004,257	7,492,079	512,178	**6.8%**	19.9%	19.9%
일 반 회 계	7,607,245	7,236,491	370,754	5.1%		
평 생 교 육 국	3,389,487	3,018,155	371,332	12.3%		
평 생 교 육 과	34,346	34,346	0	-		
교 육 협 력 과	3,203,947	2,832,617	371,330	13.1%		
청 소 년 과	76,414	76,412	2	0.1%		
도 서 관 정 책 과	74,780	74,780	0	-		
여 성 가 족 국	4,217,758	4,218,336	△578	△0.1%		
여 성 정 책 과	28,596	28,577	19	0.1%		
가 족 다 문 화 과	105,629	105,845	△216	0.2%		
보 육 정 책 과	3,039,066	3,041,893	△2,827	0.1%		
아 동 돌 봄 과	1,014,878	1,012,500	2,378	0.2%		
일 가 정 지 원 과	27,743	27,675	68	0.2%		
여 성 비 전 센 터	1,846	1,846	0	-		
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	397,012	255,588	141,424	55.3%		

3. 여성가족국 소관 검토의견(일반회계)

가. 세입예산안 ※ 예산안책자 649쪽 ~ 652쪽 / 사업설명서 3쪽 ~ 29쪽

■ **여성가족국**의 **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**은 **3조 3,949억 2,671만원**으로 기정액(3조 3,819억 5,320만원) 대비 **129억 7,351만원 증액**(0.4%) 편성됨

《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》 (단위 : 천원)

구 분	4회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	비 고 (주요증감내역)
			금액	비율	
세입예산안	3,394,926,707	3,381,953,202	**12,973,505**	**0.4%**	
세 외 수 입	29,278,998	17,180,245	**12,098,753**	**70.4%**	•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2,301,906천원⇑(국 전체) •이자수입 8,000천원⇑(국 전체) •아이돌보미 교육수강료 등 *△211,200천원(아동돌봄과)
국고보조금	2,714,485,554	2,715,108,480	**△622,926**	**△0.1%**	•10개사업 국비내시 변경
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	651,162,155	649,664,477	**1,497,678**	**0.2%**	•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,379,800천원⇑(보육정책과) •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7,878천원⇑(국 전체)

*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미실시 등으로 관련 세입 감액

○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

▸ **자체재원**인 **세외수입**에서 **120억 9,875만원 증액**되었는데, 이는 국에서 시군과 민간에 지원한 **도비보조금 정산**에 따른 **집행잔액 및 이자** 등을 **세입조치**한 것이며,

▸ **국고보조금**은 국비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△6억 2,293만원이 감액되었으며

▸ **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** 만3세~만5세 대상 누리과정 보육료 증액 등 **교육비특별회계**로부터 **전입금 13억 7,980만원**과 여성가족국 **국비집행잔액 1억 1,788만원**을 **세입편성**한 것임

○ **여성가족국**의 세입예산안은 국·도비 정산잔액을 세입조치하고,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금회 증액된 **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(세외수입)** 123억 가운데 **99억원**은 **금년 8월 이전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들에서 발생**된 것으로 확인되는바,

- 지난 제3회 추경(21.9월) 시 **조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더라면, 가용재원**으로 **활용**할 수 있었으나, **2021 회계연도 종료를 앞둔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** 자금이 **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**되므로, 향후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세출예산안

■ **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**는 **4조 1,939억 4,821만원**으로 기정액(4조 1,513억 4,152만원) 대비 **426억 669만원 증액**(1.0%) 편성됨

《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》 (단위 : 천원)

구분(추경사업)	제3회 추경예산안		기정 예산액	증감	
		구성비		금액	비율
여성가족국(21개)	**4,217,758,261**	**100%**	4,218,336,367	**△578,106**	**0.1%**
여성정책과(1개)	28,596,186	0.7%	28,577,049	**19,137**	**0.1%**
가족다문화과(1개)	105,628,886	2.5%	105,844,886	**△216,000**	**△0.2%**
보육정책과(6개)	3,039,065,955	72.0%	3,041,892,831	**△2,826,876**	**△0.1%**
아동돌봄과(12개)	1,014,878,272	24.0%	1,012,500,392	**2,377,880**	**0.2%**
일가정지원과(1개)	27,743,224	0.7%	27,675,471	**67,753**	**0.2%**
여성비전센터(-)	1,845,738	0.1%	1,845,738	-	-

○ 금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모두 **21개사업**으로 ① 자체사업 4건 ② 국고보조사업 13건, ③ 재무활동(국고보조금반환금) 4건이며,

❶ (자체사업) 4건 1,463백만원 ☞ 신규(1) 1 + 증액(2) 1,484 + 감액(1) △22
❷ (국고보조) 13건 △2,156백만원 ☞ 감액(8) △6,101 + 증액(5) 3,975 **※신규(無)**
❸ (재무활동) 4건 115백만원 ☞ 4개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

■ 道 **자체사업 : 4개사업**에서 **14억 6,316만원 증액**편성됨**(신규 1, 증액 2, 감액 1)**

○ **道 자체사업** 가운데 **신규사업**은 아동돌봄과의 "**신고보상금 상환**(자체/직접) **120만원**(예산안 816쪽/사업설명서 31쪽)" **1건**이 편성됨

- 동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한 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*(권익위⇒신고자/21.8월)하고,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 제1항[1]에 의거 지자체 부담분 가운데 道부담분을 국고에 상환통지(권익위⇒道,수원시/21.99)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, 예산편성에는 문제는 없음

*부패신고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(환수조치)을 가져왔다는 인과관계 성립이 인정됨(권익위, 21.8월)

- 다만,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여성가족국 예산 특성상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정산업무에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

○ 예산이 **증액 또는 감액되는 3개사업**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량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《 道자체 증액/감액 내역 》 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사 업 설명서	4회추경안	기정액	증감액	증감사유
보 유 정 책 과 (3)		650,576,643	649,114,680	**1,461,963**	
누리과정 운영 지원 (자체/지원)	51쪽	628,193,352	626,793,352	**1,400,000** (0.2%⇑)	**누리과정보육료 아동(만3~만5세) 증가** 152,282명 ⇒ 157,666명/5,384명⇑ ※ 도교육청 유아교육과-12325(21.9.8)
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(자체/지원)	54쪽	22,517	44,520	**△22,003** (49.4%⇓)	**대상아동 감소(36⇒20명/△16명)** ※ 도교육청 유아교육과-12325(21.8.17)
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(자체/지원)	61쪽	22,360,774	22,276,808	**83,966** (0.4%⇓)	**공공형 어린이집 증가***로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증액 *625 ⇒ 636개소/11개소⇑

1) **법 제70조의2(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)** ① **위원회는** 제68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.

■ **국고보조사업 : 13개사업**에서 **△21억 5,581만원이 감액**편성됨**(증액 5, 감액 8)**

○ 제3회 추경 이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국비변경과 이에 따른 매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

- 다만, 아동돌봄과의 “다함께돌봄사업 학교-지차체 협업모델”이 계획 대비 운영이 저조하여 국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, 향후 대응방안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

《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감 내역 》 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사 업 설명서	4회추경안	기정액	증감액(율)	증감사유
여 성 가 족 국 (8 개)		**1,254,607,009**	**1,256,761,297**	**△2,154,288**	
가 족 다 문 화 과 (1)		**79,812,000**	**80,028,000**	**△216,000**	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	41쪽	79,812,000	80,028,000	△216,000 (0.3%⇓)	국비변경내시(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 집행액 감안 사업량조정)
보 육 정 책 과 (2)		**345,964,777**	**350,271,708**	**△4,306,931**	
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	47쪽	326,503,165	330,941,008	△4,437,843 (1.3%⇓)	육아종 또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감소(930⇒743명, △187명)
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	57쪽	19,461,612	19,330,700	130,912 (0.7%⇑)	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증가 (625⇒636개소, 11개소⇑)
아 동 돌 봄 과 (5)		**828,830,232**	**826,461,589**	**2,368,643**	
아동수당 지급	71쪽	754,705,969	751,754,030	2,951,939 (0.4%⇑)	국비변경내시 반영(당초 소요예산 대비 국비과소교부 후 금회 추가교부)
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	74쪽	4,883,681	4,702,751	180,930 (3.8%⇑)	후원 아동수 증가 (12,254⇒12,830명/576명⇑)
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	91쪽	5,880,000	6,300,000	△420,000 (6.7%⇓)	사업량 감소 (120⇒112개소/△8개소)
다함께돌봄사업(학교-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지원)	94쪽	116,916	1,072,500	△955,584 (89.1%⇓)	학교돌봄터 사업량 감소 (203⇒15개소/△188개소)
아이돌봄 지원	98쪽	63,243,666	62,632,308	611,358 (1.0%⇑)	이용대상(아동) 증가 (18,105⇒20,258명/2,153명⇑)